##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호 9385 제안연월일: 2025.3..

제 안 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#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 과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0307호)	김선교의원	2024.6.11.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4.8.26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회부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2290호)	정부 제출	2024.7.26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전체회의 (2024.9.25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
- 가.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2. 26.) 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- 나. 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 3. 6.)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,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 려는 것임(제14조제4항).
- 나. 어업 면허·허가,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,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 전단 중 "제1항의"를 "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"로, "관한 규정을"을 "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"로한다.

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·같은 조 제2항제1호·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,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성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조성금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2조제2항 중 "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4조제2항제5호, 같은 조 제4항 후단,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"를 "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4조제4항 후단,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"로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포획·채취금지) ① ~ ③	제14조(포획·채취금지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는 관할 수역의	<b>4</b>
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	
필요하다고 인정되면 <u>제1항의</u>	제1항에
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	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
간 등에 <u>관한 규정을</u> 강화하여	
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	-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
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	로 그 규정을
한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44조(조성금) ① 행정관청은 수	제44조(조성금) ①
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	
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	
금액(이하 "조성금"이라 한다)	
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	
1. 「수산업법」 제7조에 따른	<u>&lt;삭 제&gt;</u>
어업면허 또는 「양식산업발	
전법」 제10조에 따른 양식업	
면허를 받은 자	

- 2. 「수산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「양식산업발 전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 은 자
- 3. 「수산업법」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「양식산업발 전법 1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「수산 종자산업육성법 .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
- 4. 「수산업법」 제43조에 따른 | <삭 제>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
- 5. 「수산업법」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
- 6. ~ 10. (생략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 하다.
- 1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3 조·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・ 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 동조합으로서 「수산업법」

<삭	제>
\ \	~ 'II

<삭 제>

<삭 제>

6. ~ 10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. 「양 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따 른 양식업 면허 또는 「수산 종자산업육성법 .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

- 2. (생략)
- 3. 「수산업법」 제48조에 따라 │ 〈삭 제〉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・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을 신고한 자
- 4. (생략)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| <삭 제> 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
- ③ (생략)
-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 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하여야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

2. (현행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<u>제1항제7</u>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 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 정하여야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 는 그에 따른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다. -----

을 고려하여 정한다.이 경우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⑤ ~ ⑦ (생 략)⑤ ~ ⑦ (현행과 같음)